



보 도 자 료

- ▶ 2004. 12. 30 배포
- ▶ 총 6 쪽 (사진없음)

▶ 산재보험과 박희준사무관
T E L : 503-9761
E-MAIL : 1974juno@hanmail.net
F A X : 507-373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산재보험요율 전년대비 9.5% 상향조정

-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은 8개 군으로 구분
-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표준단가로 총공사금액 산정

-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(이하 보험료징수법)에 의거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, 건설업·별목업 노무비율,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등 8건을 고시하였다.
-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은 보험급여증가와 재정안정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 되었다.
- 2005년도 평균보험요율은 1.62%로 전년도 1.48%보다 9.5%가 증가한 것으로
- 이는 보험급여 지급액이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 19.5%로 증가하였고 보험료율은 '01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조정되어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.

※ 붙임 1. 연도별 보험급여 및 재정수지 현황

-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상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수입증대 노력과

- 산재예방 강화와 합리적 요양관리 등으로 급격한 보험급여 증가를 완화하도록 하여 보험료 인상율을 최소화하였다.
 - 한편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와 별목업을 제외한 전사업에 재해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가감되는 산재보험요율 특례가 확대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-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추산하기 위한 건설업 노무비율의 경우 일반공사는 전년대비 1%p 상승한 28%, 하도급 공사는 전년대비 1%p 하락한 33%로 조정되었다.
- 별목업 노무비율은 별목재적량 1㎡당 12,274원으로 전년대비 180원 하락하였다.
-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를 위한 기준임금은 업종별 임금수준의 유사성에 따라 8개 군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였다.
- 2005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납부편의를 위해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대신 업종별 기준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공단에서 부과고지 하는 징수특례제가 시행된다.
 -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실태를 반영하고 사업장·근로자간 형평성을 위해 기존의 전산업 단일 기준임금 대신 임금수준이 유사한 업종을 8개 군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였다.
 - 최고 임금수준인 1군은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2,765천원이며, 최저 임금수준인 8군은 교육서비스업으로 994천원이다.
- 중·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경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,256,070원~월 4,537,470원 범위 내에서 7등급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였다.

-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·최저보상기준금액과 동일수준으로 구분하여 근로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
 - 보험가입자는 고시된 임금액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.
- 기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공사금액은 건축용도(15종)·구조별(10종) 표준단가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
- 고용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반영되는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,314,036원으로 결정하였다.
 -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징수업무보다 피보험자관리, 미가입사업장의 적용촉진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.

※ 붙임 2 : 보험료징수법 관련 주요내용

<붙임 1>

< 연도별 보험급여 및 재정수지 현황 >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	'99	'00	'01	'02	'03	'04(추정)
보험급여 (증 감 율)		12,742 (-)	14,563 (14.3)	17,446 (19.8)	20,203 (15.8)	24,818 (22.8)	29,283 (18.0)
재정 수지	수 입	15,970	19,555	23,645	27,156	27,112	32,308
	지 출	14,992	16,847	19,998	24,352	29,607	34,688
	수지차	978	2,708	3,647	2,804	△2,495	△2,380
평균보험요율 (증 감 율)		16.5 (-)	17.6 (6.7)	16.7 (△5.1)	14.9 (△10.8)	13.6 (△8.7)	14.8 (8.8)

<붙임 2>

보험료징수법관련 고시 주요 내용

고시명	2005년 고시	이전 고시	비고
2005년도 산재보험료율	○전산업 평균요율 16.2/1000 - 최저요율: 금융업등 3개업종(4/1000) - 최고요율: 벌목업(489/1000) ○ 사업종류 변경: 61개업종 - 「기타의 각종사업(905)」 중 교육서비스업(90502)을 분리하여 「교육서비스업(909)」 신설(7/1000)	○전산업 평균요율 14.8/1000 -최저 :금융업 등3개(4/1000) -최고 : 벌목업(408/1000) ○사업종류 변경 :60개 업종 - 「기타의 각종사업」에서 「보건·사회서비스업」을 분리 신설(4/1000)	9.5%
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	○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% ○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3%	○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7% ○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%	3.7% △2.9%
2005년도 벌목업 노무비율	○벌목재적량 1㎡ 당 12,274원	○벌목재적량 1㎡ 당 12,454원	△3.7%
2005년도 고용·산재보험료부과를 위한 기준임금	○업종별 월평균임금 총액을 임금수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8개 군으로 분류 - 2,765,000원(1군)~994,000원(8군)	○1,301,760원(전산업)	업종별 세분화
중·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고시	○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-임금액은 월 1,233,070원~4,537,470원 -평균임금(일)은 41,869원~151,249원	○7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-임금액은 월 1,110,600원~4,374,000원 -평균임금(일)은 37,020원~145,800원	13.1%
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 관한규정	○총공사금액은 건축용도·구조별 표준단가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○건설공사 용도·구조별 표준단가 - 실태조사결과 건설공사 용도 15종, 구조 10종별 표준단가 산출	<신설>	
2005년도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임금	○ 2,314,036원	○1,969,474원	17.5%

보험사무대행 지원금 지급기준 -징수사무지원금	정액제 - 5인미만 사업장 · 수납률 65%이상 : 사업장당 15,000원 ※수납률 80%이상 : 2,000원 추가지원 - 5인~10미만사업장 · 수납률70%이상 : 사업장당 20,000원 ※수납률 90%이상 : 3,000원 추가지원 - 10인이상 사업장 · 수납률 80%이상 : 사업장당 35,000원 ※수납률 95%이상 : 5,000원 추가지원	정률제 - 수납률 80%~95% 미만 : 수납액의 1% - 수납률 95% 이상 · 16인 미만 수납액의 5% · 16인~29인:수납액의 3% · 30인 이상 :수납액의 1% - 산재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장수살비 3000원 지급	정률 지원 ↓ 정액 지원
-적용촉진장려금	○ 지급시기 : 반기별 ○ 지원요건 및 지원액 -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위임받아 성립신고를 한 경우 : 사업주 1인당 30,000원 ※ 1년이상 위임관계 유지 : 10,000원 추가 지급	○ 지급시기 : 반기별 ○ 지원요건 및 지원액 - 고용·산재 모두를 위임받아 적용하고 수납률 80%이상인 경우 : 위임기간 6월~1년미만은 사업주 1인당 10,000원 ※ 1년이상 위임관계 유지 : 10,000원 추가지원	
-피보험자관리 지원금	○지원시기 : 분기별 ○지원요건 및 지원액 - 5인미만 사업장 · 취득·상실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경우: 11,000원 ※4건이상 신고한 경우 2,000원 추가 - 5인~10인미만 사업장 · 취득·상실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경우 : 9,000원 ※6건~9건 신고한 경우 1,000원 추가, 10건이상 신고한 경우 2,000원 추가 - 10인이상 사업장 · 취득·상실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한 경우 : 7,000원 ※10건~20건미만 신고한 경우 1,000원 추가, 20건이상 신고한 경우 2,000원 추가 - 피보험자가 있으나 취득·상실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가 없는 경우 4,000원 지원 ※ 1건의 신고서상 2인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인원수를 건수로 산정	○지원시기 : 반기별 ○지원요건 및 지원액 -10인 이하 : 8,000원 -11인~29인 : 5,000원 -30인 이상 : 3,000원 ※위임기간 3월~6월미만 50% 감액, 3월미만은 미지급	